한국민간경비원의 교육훈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임 명 순*

< 목 차 >

Ⅰ. 서 론
Ⅱ. 민간경비 교육훈련에 대한 검토
Ⅲ. 각국 민간경비 교육훈련 실태
Ⅳ. 한국 민간경비 교육훈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 론

Ⅰ. 서 론

지난 세기와 달리 21세기는 급격한 변동의 시대이고 불확실성과 복잡 다양성의 시대이며, 지식정보화의 시대이고 국경 없는 세계화의 시대라 할만하다. 확실히 21세기 사회는 정치·경제·사회 문화·정보·기술 등 모든 면에서 지난 세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변화의 사회임에 틀림이 없다. 이러한 급격한 치안환경의 변화 속에서 경찰의 역할과 기능 변화의 중요성은 더욱더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경찰은 예산부족과 과중한 업무량, 경찰장비부족과 인력의 부족 등으로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경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사회는 정부의 치안기능 만으로 범죄예방활동이 완벽히 행해지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경비제도의 활성화를 통해서 경찰의 기능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과 안전을 보호하는 쪽으로 정책의 기본방향이 바꾸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 민간경비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들 수 있다[1]. 그것은 직장과 가정에서의 범죄의 증가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증가, 지방 또는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의 재정적 위기와 제한된 공경비의 예산, 시민과 사업체들의 자각의 증가, 합리적 비용의 민간경비산업상품과 서비스의 증가, 재산범죄가 산업분야의 가장 최우선 고

* 대구대학교 행정대학 경찰행정학과 강사, 행정학박사

1) 장대홍, "미국 민간경비 산업의 새로운 경향", 한국민간경비학회 제2회 국제학술 세미나(2001,6), p.26.

려가 되어야 할 관심거리라는 인식 등이다.

현재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민간경비산업의 양적 성장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질적 성장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질적 성장 부분에 포함되는 것이 민간경비원의 질적 문제, 전문성 문제, 경쟁력보유, 근무환경문제 등일 것이다. 민간경비원들의 자질문제는 바로 고객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결과는 직·간접으로 민간경비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민간경비업체의 교육훈련을 검토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II. 민간경비업체의 교육훈련에 대한 검토

1. 민간경비교육훈련의 의의

1) 민간경비교육훈련의 개념

조직원의 업무수행능력을 계발하는 방법은 교육과 훈련으로 구분할 수 있다. 훈련과 교육프로그램은 조직원의 개인적 성장과 능력계발을 위한 전략이지만, 이것들은 개념적으로 구분된다[2]. 우리나라에서 보통 사용하는 교육훈련이라는 용어는 교육과 훈련의 합성어로써 양자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이지만, 단기적인 직무기술의 향상에 목적을 두고 교과과정이 구성되어 있는 경찰교육기관이나 민간경비업체의 교육기관의 교육훈련은 그 성격상 교육이라기 보다는 훈련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교육훈련이란 조직의 목표를 보다 민주적·효과적·능률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바람직한 공직윤리와 맡은바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식·기술·정보 등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Rousseau와 Key는 교육을 "인간의 자연적인 발전을 위한 모든 조성작용"이라고 하여 자연주의를 교육이념으로 주장하면서 개인의 능동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추었다. O. W. Wilson은 경찰교육훈련의 중요성으로서 "장래의 계획 및 지도를 담당할 수 있는 우수한 직원들을 양성하는 것이 최상의 방안이다. 자질 높은 우수한 직원이 배출될 때 경찰의 목적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다. 또 이것은 교육훈련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하였다[3]

2) 조철옥, 「경찰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2000), p.376.
3) O.W.Wilson & Roy C. Mclaren, *Police Administration*, 4th ed.(N.Y : McGraw-Hill, Inc., 1977), p.298.

교육훈련의 필요성은 다음 3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4].

첫째, 본질적으로 완벽한 인간은 있을 수 없고 한시적으로 특정상황아래서 거의 완벽하다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변동되는 미래상황에 모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는 없다는 점이다.

둘째, 인간의 능력은 의식적인 노력을 통하여 개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개인의 능력발전은 자신은 물론 개인이 속해 있는 조직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점등이다.

이러한 필요성은 공무원 조직뿐만 아니라 모든 대상의 교육훈련에 대해서 적용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 교육훈련의 목적

민간경비교육훈련의 기본적인 목적은 경비원으로 하여금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고 가치관을 정립하여 경비업무를 원만히 처리하고 민간경비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민간경비원 자신의 안전은 물론 고객의 안전과 만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경비업무수행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시험에 지원할 수 있는 균등한 자격의 부여, 직무만족을 위한 경력, 지식의 이론적 뒷받침과 응용기술의 기초를 제공하는 데 있다[5]. 우리 나라 민간경비교육훈련의 목적은 첫째, 민간경비원으로서의 바람직한 정신자세의 함양이고, 둘째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적 능력의 배양이라고 할 수 있다.

민간교육훈련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목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비직무수행능력의 향상: 직무수행의 질과 양이 향상된다.

둘째, 직무수행의 능률화: 인력과 물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각종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

셋째, 부적격자 발견: 선발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은 부적격자를 발견할 수 있다.

넷째, 직무습득에 소요되는 노력·시간의 절약: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하여 경비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짧은 시간에 부여할 수 있다.

다섯째, 사기의 제고 : 그가 소속된 민간경비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4) 오석홍, 「인사행정론」 (서울: 박영사, 1996), p.260.

5) Donald O. Schultz, *Modern Police Administration*, 이상원·남궁구, 「현대경찰행정학」 (서울: 진명문화사, 1992). p.56.

는 그 자신의 직무에 대한 근무의욕과 사기가 높아질 수 있다.

그 외에도 교육훈련의 목적으로는 경력발전과 민간경비산업에 기여하며 책임 있는 민간경비원으로서 정립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구축해 나아가는 것이다.

2. 민간경비교육훈련의 종류와 방법

1) 교육훈련의 종류

교육훈련의 목적이 민간경비원이 담당할 직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의 부족분을 가급적 짧은 시일내에 보완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부족한 내용에 따라 훈련을 시키는 민간경비교육훈련의 목적 내지 내용에 의거한 분류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자한다.

(1) 적응훈련(기초훈련)

적응훈련은 신규로 채용된 직원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교육훈련으로서, 일반적으로 조직의 목적, 기능, 구조, 규칙 등을 포함하여 임용 후 직책수행에 요구되는 기초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2) 재직자 교육훈련

재직 근무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능력의 향상과 변화에의 적응을 위한 새로운 지식 또는 규칙이나 법령의 내용을 습득시켜 새로운 근무환경에 대응능력을 배양시킬 목적으로 정기적으로나 수시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이다.

(3) 감독자 교육훈련

현장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각 조직의 책임자급관리자와 구분하여 중간관리자들에 대한 교육훈련 과정을 말한다.

(4) 관리자교육훈련

감독자 보다 높은 계층의 고급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으로서, 이들에게는 기술적인 전문분야의 업무를 자기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이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므로 정책결정, 조정, 통제, 대내외적 연계작용 등을 주임무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윤리교육훈련

윤리교육훈련은 민간경비원의 가치관, 태도의 발전적 변화를 모색하는 일련의 교육훈련으로서 경비원의 직업윤리와 행동규범을 경비원들에게 체득시키는 훈련을 말하며, 흔히 정신교육이라고도 부른다.

2) 교육훈련의 방법

일반적으로 민간경비원의 효과적 훈련은 ① 관련된 훈련목표 설정 ② 훈련특성화의 한정 ③ 적절한 전략의 선택 ④ 알맞은 구조적 배치 ⑤ 프로그램 평가와 개선 등을 필요로 한다[6]. 또한 경비원의 의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교육훈련 내용의 한 방편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일반적 범주로 나누어질 수 있는 경찰심리 훈련을 시도해 볼 수도 있다[7].

① 개개 경비원을 한 인간으로서 발전시키는 훈련이다(예 : 건강훈련). 이러한 건강훈련(wellness)에는 금연, 근친과의 사별에 대한 대처, 부모 등 노인의료지원, 적극적 대처능력, 가정교육 등의 훈련이 있다.

② 개개 경비원을 전문가로서 발전시키기 위해 문제에 대처하도록 하는 훈련이다(예 : 지식이나 기술훈련). 이러한 지식과 기술훈련(informational or skilltraining)에는 심리적 서비스 입문, 심리적 감독 측면, 피훈련자 교육, 문제직원 파악, 물리력 사용 감독, 성희롱 의식, 불평관리, 비판적 사건 선별, 이해력과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팀빌딩(team building), 변화 대처능력 등의 훈련이 있다.

③ 개개 경비원을 조직 구조 내에서 문제를 대처하도록 하는 훈련이다(예 : 조직훈련).

일반적으로 경비원의 교육훈련방법은 분류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제시될 수 있으나 그 중에서 중요한 훈련방법에는 강의방법, 회의방법, 토의방법, 사례연구방법, 역할연기방법, 감수성훈련방법, 현장훈련방법 등이 있다[8]. 그 밖의 훈련방법에는 견학(observation), 시

6) Palul M. Whisenand, *Police Supkervision Theory and Practice*, 2nd ed.(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76), pp.252~253.

7) Kurke, Martin I., et. al.. (1995). *Police Psychology Into the 21st Century*(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1995), pp.252~253.

8) 첫째, 강의방법으로서 이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며,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교육시킬 수 있으며, 교육훈련의 내용을 신축성 있게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둘째, 회의방법으로서 보통 12인에서 25인까지 참석하여 사회자의 진행아래 일정한 주제를 놓고 토의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한 주제에 대하여 소수의 사람이 먼저 주제발표를 한 다음 여러 사람이 토의 벌이는 토의방법으

청각교육, 전직(transfer), 순환보직(rotation)[9], 실습(internship), 신디케이트(syndicate) 및 통신교육 등이 있다. 민간경비교육훈련에 관한 바람직한 결과는 면밀한 훈련계획의 수립·집행, 적절한 훈련방법의 선정, 유능한 교관의 확보 등 많은 투자와 노력에 의해 얻어진다. 그리고 교육훈련의 목적달성의 여부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발생된 애로점의 여부, 그에 대한 대응책이 무엇인지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그 결과를 차후 교육훈련의 기회에 반영시켜 보다 나은 민간경비교육훈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므로 민간경비교육훈련에 대한 사후평가를 하여야 한다.

III. 외국의 민간경비 교육훈련실태

1. 미국의 민간경비교육훈련

미국의 주요 주 입법기관들은 민간경비원들이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으로서 교육과 훈련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의 50개주 중에서 23개 주는 어떤 형태로든 경비원 교육훈련을 요구하고 있고 14개주는 비무장 경비원훈련을 요구하고 있다.[10] 이와 같이 민간경비원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있는 이유로는 높은 이직율, 비효율적인 업무수행, 매우 낮은 승진기회와 훈련 수준, 저임금, 최저수준의 고용인 등의 경비업계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좀더 잘 교육훈련을 받은 경비원들은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숙달된 기술을 보유하게 되고, 그에 따른 업무수행능력의 향상, 지위상승과 높은 보수 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민간경비분야에서 미국전역을 통해 훈련, 자격(면허) 등에 있어서 합의나 통일이 되지 않음에 따라 이들의 조정을 위한 연방정부의 시도가 몇 차례 있어왔다.

로서 자유롭고 공개적인 분위기에서 집단사고를 통해 중지를 모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넷째, 사례연구방법으로서 사전에 주어진 사례를 대상으로 다수의 사람이 토의하는 것을 말한다.
다섯째, 역할연기방법으로서 이는 사전에 준비된 사례를 여러 사람 앞에서 실제로 연기한 후 여러 사람이 평가하고 분석해 보는 방법이다.
여섯째, 감수성훈련방법으로서 10인 내외의 피훈련자들이 일정한 주제에 대해 자유토론을 거쳐 문제해결방안을 창출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방법이다.
일곱째, 현장훈련방법으로서 실제의 작업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훈련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9) 전직 및 순환보직을 한 직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직위를 달리해 훈련하는 방법으로서 경험과 시야를 넓힐 수 있어 고급공무원훈련에 효과적이다.

10) Robert J. Fisher and Gion Green, *Introduction to Security*, 6th ed.(Woburn, MA: Butterworth-Heinemann, 1998), p.45.

그 첫 번째 시도로서, 엘 고어 부통령은 제출한 법안에서 모든 민간경비에 대한 최소 표준 훈련시간을 제시하였고, 훈련과목[11]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두 번째 시도로서, 1992년 하원의원 Mathew Martinez의 주도하에 개선안이 제시되었다. 그는 최소 8시간의 기본강의식 교육과 서면시험, 최소 4시간의 보수교육을 권고하였다. 마티네즈 법안은 교육훈련 내용에 대해서도 권고하였다.

세 번째, 하원의원 Don Sundquist에 의해 1993년법안이 제출되었는데, 선더키스트는 최초훈련으로 최소 16시간을 요구하며, 이중 8시간은 근무배치전에 실시되도록 하였다. 이외에 총기휴대(무장) 근무자는 의무적으로 이미 규정된 16시간 이외에 24시간의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되어있다. 이 법안은 4시간의 재교육 과정을 포함하는 년간 훈련자격조건을 주정부에 위임하고 있다.

Private Security Task Force는 근무 배치전 경비원들에게 다음의 과목과 시간을 훈련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12].

- 일반적 지침(시큐리티의 역할, 외모, 보고서 작성 등) 2시간
- 법적권위와 한계2시간
- 비상사태 대응법(폭탄위협, 화재, 폭발)2시간
- 일반적 의무(순찰과 화재예방)2시간

민간경비의 가장 기본적인 입문단계는 비무장 경비원의 과정이다. 이 과정은 보통16시간(여기에는 입소, 수료식시간, 시험시간 등은 제외)인데, 이것은 한 근무자가 민간경비산업에서 직장을 얻고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하는 최소시간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13].

민간경비교육훈련에 대한 교육훈련체제가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잘 정비된 일리노이주에서는 20시간의 기본적인 경비관련 훈련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리노이주에서는 민간경비보급업자, 기계경비도급업자는 기본교육(사경비업과 그 한계, 법집행기관들에의 보고, 보고서 작성, 화재예방과 기타 안전조치들, 화재 및 안전장비, 인간관계)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교육훈련을 최소한 2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14].

---

11) 고어 법안은 화재예방과 보호, 응급처치, 민간경비 업무에 제공되는 관련법률정보, 수사와 구금절차, 건물안전, 위기상황 취급방법, 군중통제방법, 민간경비 업무에 제공되는 필요한 장비사용, 보고서 작성기법 등의 과목을 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12) Robert J. Fisher and Gion Green, op.cit., p.45.

13) Australia Achiever, Security OZ, 2000, issue2, p.26.

14) 박동균, "한국경비지도사 발전방향", 경호경비연구, 제5호, 한국경호경비학회(2002.2), p.138.

<표3-1> 자격취득을 위한 최소훈련시간의 예

총기휴대 경비원	24시간
무장호송 경비원	20시간
경비견 훈련	28시간
신변보호 전문가	60시간
경보응답	16시간
상황실 운영요원	8시간
기계경비 전문가	14시간
기계 경비전문보조요원	4시간

자료 : National Security Training Academy, Fainfax, VA.

① 기초전자학 ② 장비 및 유선요구물 ③ 비디오탐지 및 경보시스템 ④ 화재탐지 및 경보시스템 ⑤ 전문시스템 ⑥ 주변탐지 ⑦ 움직임 탐지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한편 일리노이주에서는 용역경비업법에 총기류를 다루는 모든 경비요원들에게는 총기류 취급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다. 담당부서에서 승인한 20시간의 총기류 훈련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지 않고서는 총기류를 사용하거나 휴대 또는 소지를 요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교육훈련과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총기류의 합법적인 사용(legal use of firearms) ② 총기류 사용의 윤리적 도덕적인 고려사항(ethical and moral considerations of weapon use) ③ 무장시 행동수칙(liability of acts while armed) ④ 살상용 무기의 사용(use of deadly forces) ⑤안전과 유지(firearm, safety and maintenance), ⑥ 포획과 체포절차들(search, seizure and arrest procedures while armed) ⑦ 총기류사용의 기본원칙들(fundamentals of firearm use) ⑧ 쥐는법(grip) ⑨ 조준정렬(sight alignment) ⑩ 조준법(sight picture) 등이다.

이와 같이 서술한 교육훈련 말고도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미국내에 민간경비 분야의 교육기관으로는 70개의 면허기관, 97개소의 전문대학과정, 35개의 학사학위과정, 10개의 석사학위대학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2. 호주의 민간경비교육훈련[15]

15) 이상원, Security교육훈련과 자격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제14차 경영자세미나, 한국경비협회, 2002, pp.69~73.

1) 교육훈련

직업교육과 훈련분야에서 각 주정부가 자격증 발급에 대한 합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 책임은 등록된 훈련조직이나 법규에 의해 권한이 주어진 조직에 의해 수행된다. 예로서 Security training academy, TAFE, Training college 등이 해당된다.

AQTF(Australia Quality Training Framework)는 자격을 발급하는 등록된 훈련조직을 위해 국가적으로 인정된 표준절차를 제공한다. 각 등록된 훈련조직은 주어진 훈련시간과 절차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소정의 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발부하고, 관련된 기록 및 행정적 절차를 유지해야 한다.

(1) 훈련시간

등록된 훈련조직의 교육훈련시간은 각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다. 여기에서는 Western Australia의 예를 들어보고자 한다.

<표3-2> Western Australia의 각 자격별 훈련시간의 예

코 드	자격유형	시 간
PRS 20198	시큐리티 2급(경비 : Guarding)	94-182
PRS 30198	시큐리티 3급(경비 : Guarding)	126-268
PRS 30298	시큐리티 3급(실내통제운영 : Control room Operations)	88-162
PRS 10198	시큐리티 1급(판매지원 : Sales Support)	50-70
PRS 30398	시큐리티 3급(기술적 출입접근 : Technical Access)	304-392
PRS 20498	시큐리티 2급(사설탐정 : Investigation Services)	142
PRS 40598	시큐리티 4급(위기관리 : Risk Management)	450

자료 : Asset Security Training Package Implementation Kit의 Qualification을 요약 정리한 것임

Western Australia 주의 시큐리티 교육훈련시간의 각 자격별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시큐리티 2급(경비 : Guarding)은 94-182시간(최소 94시간)의 교육훈련 시간으로 정해졌고, 시큐리티 3급(경비 : Guarding)은 126-268시간(최소 126시간)을 이수하게 되어있다. 시큐리티 3급(실내통제운영)은 88시간-162시간(최소 88시간), 시큐리티 1급(판매지원)은 50-70시간(최

소50시간)의 교육훈련시간을 필요로 한다. 시큐리티 3급(기술적 출입접근)은 304-392시간(최소 304시간)을, 시큐리티 2급(사설탐정)은 142시간을, 시큐리티 4급(위기관리)은 45시간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각 자격별로 이수해야 할 시간이 차이가 나는 것은 선택과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육훈련 시간은 각 주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예로서 시큐리티 2급(경비 : Guarding)은 Western Australia 주에서는 최소 92시간을 이수하게 되어있지만 Queensland 주에서는 최소 이수시간이 80시간으로 되어있고 시큐리티 3급(경비 : Guarding)은 Western Australia에서는 최소훈련시간이 126시간으로 되어있지만 Queensland에서는 120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2) 교육훈련 교과과정

<표3-3> 시큐리티 2급(Guarding : 경비) 교과과정의 예

코 드	과 목	코 드	과 목
PRSSG 01A	재산과 부동산의 경비유지	PRSSG 12A	사람에 대한 안전제공
PRSSG 03A	재산의 안전유지	PRSSG 13A	군중관리(통제)
PRSSG 04A	현장에서 통신	PRSSG 17A	고객과 효과적 관계유지
PRSSG 05A	갈등관리	PRSSG 18A	팀활동
PRSSG 06A	직업적 건강과 안전유지	PRSSG 25A	응급처치 제공
PRSSG 07A	업무수행관리	PRSSG 28A	법률과 절차의 이해와 설명
PRSSG 08A	기본시큐리티 장비운용	THBTHS 04A	취한사람 관리
PRSSG 11A	귀중품 운반과 에스코트	THBTHS 16A	고객편의 제공

자료 : National Security Training Academy 내부자료, 2002.

Queensland 주 Brisbane의 National Security Training Academy의 시큐리티 2급(경비 : Guarding)의 교과목은 총 16과목으로 교육기간은 2주(80시간)로 하루 8시간씩 교육훈련을 받게되어 있다.

교과목으로는 재산과 부동산의 경비유지, 재산의 안전유지, 현장에서의 통신, 갈등관리, 직업적 건강과 안전유지, 업무수행관리, 기본 시큐리티 장비운용, 귀중품운반과 에스코트, 사람에 대한 안전제공, 군중관리(통제), 고객과 효과적 관계유지, 팀 활동, 응급처치제공, 법률과 절차의 이해와 설명, 취한사람관리, 고객에 편의제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과목의 내용은 이론 과목보다는 실제현장에서 필요한 실무위주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3-4> 시큐리티 3급(기술적 출입접근 : Technical Access) 교과과정의 예

코 드	과 목	코 드	과 목
005A(필수)	케이블 설치와 케이블 지원시스템	06A(선택)	설치계획
09A(필수)	시큐리티 장비와 시스템 설치	07A(선택)	설치조정
12A(필수)	시큐리티 장비와 시스템 program	10A(선택)	CCTV설치
13A(필수)	설치된 시큐리티 장비 시스템 테스트	11A(선택)	기계적 잠금 시스템 설치
14A(필수)	시큐리티 장비 시스템 위임	15A(선택)	일상적 유지, 수리, 변경 계획
20A(필수)	시큐리티 장비 시스템 유지	16A(선택)	기계경비 장비시스템 진단과 확인
24A(필수)	시큐리티 장비시스템 해제	19A(선택)	시큐리티 장비 시스템 수리
34A(필수)	고객문의에 응답	21A(선택)	기계적 잠금시스템 유지
35A(필수)	고객문제 해결	22A(선택)	시큐리티 장비시스템 변경 결정
43A(필수)	프로젝트 또는 업무조직과 관리	25A(선택)	시큐리티 장비시스템 제거
01A(선택)	시큐리티 평가 책임	26A(선택)	감시장치 설치
03A(선택)	시큐리티 시스템 구성과 분류	27A(선택)	감시절차 실행
04A(선택)	견적서 제공	42A(선택)	장비유지와 서비스

자료 : Western Australian Department of Training and Employment, Asset Security Training Package Implementation kit, 1999, p.25.

Western Australia 주정부에서는 시큐리티 자격3급(기술적 출입접근)에 304-392(최소304) 시간의 훈련을 요구하고 있다. 교과과정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되어 있고 필수과목은 10개 과목으로 구성되고 선택 과목은 16과목 중 8과목을 선택해서 이수케 하고 있다. 훈련기관마다 기관자체에서 선택과목을 정해놓고 교과과정을 편성하는 곳도 있다.

필수과목은 케이블 설치와 케이블 지원시스템(60시간), 시큐리티 장비와 시스템 설치(20시간), 시큐리티 장비와 시스템 프로그램(20시간), 설치된 시큐리티 장비시스템 테스트(20시간), 시큐리티 장비시스템 위임(10시간), 시큐리티 장비시스템 유지(20시간), 시큐리티 장비시스템해제(20시간), 고객문의에 응답(20시간), 고객문제해결(15시간), 프로젝트 및 업무 조직과 관리(15시간)이다. 선택과목은 모두 16과목으로 되어있다. 시큐리티 평가책임(10시간), 시큐리티 시스템 구성과 분류(30시간), 견적서제공(20시간), 설치계획(10시간), 설치조정(10시간), ㅊㅊCCTV설치(20시간), 기계적 잠금 시스템설치(10시간), 일상적유지, 보수, 변경계획(20시간), 기계경비 장비시스템 진단과 확인(20시간), 시큐리티 장비시스템 수리(10시간), 기계적 잠금시스템 유지(20시간), 시큐리티 장비시스템 수정결정(20시간), 시큐리티 장비시

스템 제거(20시간), 감시장치 설치(10시간), 감시절차실행(4시간), 장비유지와 서비스(12시간)으로 되어있다.

<표3-5> 시큐리티2급(사설탐정) 교과과정의 예

코 드	과 목
PRSIR 13A	정보수집방법선택
PRSIR 20A	서면보고서 작성 및 편집
PRSIR 22A	법정에서 사용키 위한 증거준비
PRSIR 23A	법정에 증거제출
PRSIR 38A	직업적 건강과 안전유지
PRSIR 15A	실제수사에 의한 증거수집
PRSIR 17A	인터뷰 방법과 진술

자료 : Western Australia Department of Training and Employment, Asset Security Training Package Implementation kit, 1999, p.33.

시큐리티 2급(사설탐정)의 교육훈련 교과목은 7개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정보수집방법선택(16시간), 서면보고서 작성 및 편집(20시간), 법정에서 사용키 위한 증거준비(16시간), 법정에 증거제출(20시간), 직업적 건강과 안전 유지(10시간), 실제수사에 의한 증거수집(30시간), 인터뷰방법과 진술(30시간)로 총 142시간을 이수하게 되어있다.

3. 일본의 민간경비교육훈련

1) 교육훈련

용역경비업법 제11조 제1항을 보면 경비업자와 경비원은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경비업무에 관한 지식 및 능력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경비업자 및 경비원의 노력의무를 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제2항은 경비업자는 그 경비원에 대해 경비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동법 제4장의 규정에 따르는 이외에 총리부령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교육을 행함과 동시에 필요한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비원의 교육은 기본교육과 업무별 교육으로 구분되어 있다[16].

16) 경비업법 제26조.

(1) 기본교육

기본교육은 경비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능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기본교육에는 새로운 경비업무에 종사하려고 하는 경비원(검정에 합격한 경비원 및 지도교육 책임자 자격증의 교부를 받은 경비원은 제외)과 현재, 경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비원들이 해당된다.

새로운 경비업무에 종사하려고 하는 경비원에 관한 교육사항으로는, 경비업무 실시의 기본원칙에 관한 것, 경비원 자질 향상에 관한 것, 경비업법 기타 경비업무의 적정한 실시에 필요한 법령에 관한 것, 사고의 발생시에 있어서 경찰기관에 연락 기타 응급 조치에 관한 것, 호신 용구의 취급에 관한 것 등이다. 교육시간은 신임교육15시간, 그리고 현임교육은 6개월마다 3시간씩의 교육을 받을 의무로 정해져 있다.

현재 경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비원에 대한 교육사항으로는, ① 경비업무 실시의 기본원칙에 관한 것, ② 경비업법 기타 경비업무의 적정한 실시에 필요한 법령에 관한 것, ③ 사고발생시에 있어서 경찰기관으로의 연락 기타 응급조치에 관한 것 등이다.

기본교육은 지도 교육 책임자 또는 당해 교육에 관해서 지식경험이 있는 자가 행하는 것으로 한다[17].

(2) 업무별 교육

업무별 교육은 용역경비업법 제2조의 따라 경비업무를 상주경비, 교통계도 및 잡담경비, 귀중품운반경비, 경호경비, 기계경비로 분류하고 있으며, 경비원이 종사하는 경비임무에 구분해서 해당 경비 업무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능에 관한 것을 행하는 교육이다.

업무별 교육의 교육시간으로서, 새로운 경비업무에 종사하려고 하는 경비원의 경우는 15시간의 교육시간이 필요하고 현재 경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비원은 6개월마다 5시간씩의 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업무별 교육은 강의방법과 실기 훈련방법에 의해 지도교육 책임자 또는 당해 교육에 관해서 지식 경험이 있는 자가 행하게 되어 있다.

17)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6조.

<표3-6> 업무별 교육사항과 시간

	시설경비업무	교통유도 및 혼잡경비업무	운반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교육사항	· 대상시설의 사람 또는 차량 등의 출입관리방법 · 경보장치, 기타 기기의 사용방법 · 불심자 발견, 체포, 조치에 관한 방법 · 기타 당해 경비업무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에 관한 사항	· 도로교통관계법령 · 차량 및 보행자 유도방법 · 사람 또는 차량의 혼잡 한 장소에서의 혼잡 정리방법 · 각종 기자재 사용방법 · 기타 당해 경비업무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에 관한 사항	· 운반에 사용하는 차량등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 차량 등 탑승방법에 관한 사항 · 적재 하고 있는 현금 · 귀금속 · 미술품 등의 경계방법 · 운반 중 도난 등 사고의 발생시 조치사항 · 기타 당해 경비업무에 필요한 지식, 기능에 관한 사항	· 신변보호에 있어서 경계위치, 기타 경계방법 · 각종 기자재 사용방법 · 불심자 발견, 체포조치에 관한 사항 · 신체의 위해발생 방지를 위한 피난 등의 조치사항 · 기타 당해 경비업무에 필요한 지식, 기능에 관한 사항	· 경비업무용 기계장치의 기능 · 경계 및 지령방법 · 지령업무종사경비원과 현장경비원 연락방법 · 기지국에서 사고발생에 관한 정보 수신한 경우 현장의 사실확보 방법 · 기타 기계 경비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에 관한 사항

자료 :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 26조의 3

2) 검정제도

용역경비업법 제11조2는 공안위원회는 경비업무 실시의 적정을 꾀하기 위해, 국가 공안위원회 규칙에서 정해진 것에 의해 경비원 또는 경비원이 되려고 하는 자에 대해서 그 지식과 능력에 관한 검정을 행할 수 있다[18]. 검정은 경비업무의 종별로 실시되는데, 종별로 필요한 지식과 능력은 다음과 같다[19].

① 공항보안경비

공항 등의 시설에 있어서 항공기 납치 등의 사고의 발생을 경계하고 방지하는 업무[20]

② 교통유도경비

경비업무 중 공사현장 기타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에 있어서 부상 등 사고의 발생을 경계하고 방지하는 업무

③ 핵연료 물질 등 운반경비

운반중의 핵연료 물질 등에 관한 도난 등 사고의 발생을 경계하고 방지하는 업무

④ 귀중품 운반 경비

운반중의 현금, 귀금속, 유가증권 등의 귀중품에 관계되는 도난 등의 사고의 발생을 경계하고 방지하는 업무를 실시키 위해 지식 및 능력을 검증하게 되어 있다.

18) 경비업법 제11조의 2.
19) 경비원 검정에 관한 규칙 제1조.
20) 항공기에 반입할 수 있는 물건의 검사에 관계 하는 것에 한함.

검증방법으로서는 검증을 받으려고 하는 자의 지식 및 능력을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에 의해 판정하게 되어 있다. 위의 네 가지 업종에 대해서 각각 1급, 2급으로 구분되어 실시되고 있고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3)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의 교육훈련

경비원 지도교육 책임자는 경비업자나 경비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교육실시, 관리, 감독, 경비업자에게 경비에 관련된 조언을 임무로 하고, 기계경비업무 관리자는 기계경비와 관련된 각종 통신업무, 통신기기의 설치, 운영유지, 관리, 기계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 등에 대한 교육지도, 감독, 통제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공안 위원회는 국가공안위원회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의 지도교육책임자 과정을 수료한 자, 혹은 그와 동등 이상의 지식 및 능력을 가진다고 인정된 자에게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 자격증을 교부한다. 강습사항 및 강습시간은 다음과 같다.

<표3-7> 지도교육 책임자 강습사항 및 강습시간

강습사항	강습시간
o 경비업무 실시의 기본원칙에 관한 것	2시간
o 경비업법 기타 경비업무의 적정성 실시에 필요한 법령에 관한 것	8시간
o 경비업무에 관한 기본적 지식과 기능에 관한 것	6시간
o 경비업무의 구분에 응해 전문적인 지식 및 기능에 관한 것	14시간
o 기타 경비원 지도교육 책임자로서 필요한 지도 및 교육에 관한 것	8시간

자료 : 경비원 지도교육 책임자 및 기계경비 업무 관리자에 관한 강습소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Ⅳ. 한국민간경비교육훈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한국민간경비교육훈련실태

1) 민간경비원의 교육훈련

경비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신임교육과 직무교육으로 이루어지는데, 경비업자는 경비원을 채용한 때에는 경비업자의 부담으로 신임교육훈련을 받게 해야 한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훈련은 경비협회에서 실시하고 직무교육은 당해 경비업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있다. 또 경비협회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경찰교육 훈련기관이나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경비업자에게 신임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표4-1> 일반경비원 신임교육훈련의 교과과정과 시간

구 분	교육훈련과목	시 간
학술과목	· 경비업관계법 · 헌법 및 형사법	2시간 2시간
실무과목	· 시설방호 · 불심검문 · 소방	2시간 2시간 2시간
술과과목	· 기본 훈련 및 호신술	2시간
예비시간	· 입교식 · 졸업식 · 평가	3시간
합계		15시간

자료 :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관련

경비원의 신임교육훈련 내용은 학술 과목으로 경비업법 관계법(2시간), 헌법 및 형사법이(2시간), 실무과목으로 시설방호 (2시간), 불심검문 (2시간), 소방 (2시간), 술과과목으로 기본 훈련과 호신술이 (2시간), 기타 입교식 · 졸업식 · 평가가 (3시간) 총 6개 과목에 15시간으로 되어 있다.

직무교육에 대한 교육훈련내용에 대해 현재 법령에 정해진 것은 없고 경비업자의 책임하에 자체적으로 현장실무 교육을 월4시간씩 실시하게 되어 있다.

2) 청원경찰의 교육훈련

청원경찰의 교육은 기본교육과 직무교육으로 이루어진다. 기본교육은 청원경찰에 임용된 자에 대하여 청원주가 배치하기 전에 경찰교육기관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2주간의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을 말하며 직무교육은 관할 경찰서장이 청원경찰이 소속된 사업장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것과 청원주가 소속 청원경찰에 대하여 그 직무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교육을 매월 4시간 이상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표4-2> 청원경찰 신임교육훈련 교과과정과 시간

학과별	과 목	시 간
정신교육	· 정신교육	4
학술교육	· 헌법 및 형사법(인권, 경비관련범죄, 현행범체포) ·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 민간 경비론	4 8 2
실무교육	· 기계경비실무 · 경찰관직무집행법(불심검문포함) · 시설경비(야간경비 포함) · 소방 · 정보보호 · 보안업무 · 민방공(화생방 포함) · 총기조작 · 총검술 · 사격 · 예절	4 4 6 4 2 4 6 2 4 12 2
술 과	· 체포술 및 호신술	8
기 타	· 입교 · 수료 · 평가 · 기타	4
계		80

자료 :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5호 제1항 관련

청원경찰의 기본교육 내용은 총80시간으로, 과목은 크게 정신교육, 학술교육, 실무교육과 술과, 기타로 구분된다. 정신교육(4시간), 학술교육으로 헌법 및 형사법 (4시간), 경비업법 (8시간), 민간경비론이 (2시간)이고 실무교육으로 기계경비실무 (4시간), 경찰관직무집행법 (4시간), 시설경비 (6시간), 소방 (4시간), 정보보호 (2시간), 보안업무 (4시간), 민방공 (6시

간), 총기조작 (2시간), 총검술 (4시간), 사격(12시간), 예절 (2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술과로는 체포술 및 호신술이 (8시간), 입교·수료·평가·기타가 (4시간)으로 총 17개 과목에 80시간을 이수하게 되어있다.

3) 경비지도사의 교육훈련

경비업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비지도사자격증이 있는 경비지도사를 두어 경비원을 지도·감독·교육하게 하는 제도로 경비지도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비지도사는 시설경비, 인력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특수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원을 지도·감독·교육하는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감독·교육하는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한다. 경비지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필기시험방법에 의해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고, 합격 후에는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해야만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표4-3> 경비지도사 시험과목

구 분	1차시험	2차시험
	선택형	선택형 또는 기입형
일반경비지도사	법학개론, 경비업법(청원경찰법 등 관계법 포함), 민간경비론	소방학, 범죄학 및 경호학 중 1과목
기계경비지도사		기계경비개론,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중 1과목

자료 : 경비업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관련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으로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는 1차 시험과목으로 법학개론, 경비업법, 민간경비론이 포함된다. 2차 시험에서는 일반경비지도사는 소방학, 범죄학 및 경호학 중 1과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으며, 기계경비지도사는 기계경비개론, 기계경비 기획 및 설계 중 1과목을 선택하게 되어있다.

경비지도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21].

첫째, 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

둘째,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21) 경비업법 제12조.

셋째,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넷째,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며, 경비지도사는 경찰청장이 시행하는 경비지도사시험에 합격하고 경비업법시행규칙이 정하는 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무란 기계경비업무를 위한 기계장치의 운용·감독과 오경보 방지를 위한 기기관리의 감독을 말한다[22].

경비지도사의 교육업무는 경찰청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교육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경비관계법규, 실습 등으로 한다. 경비지도사 기본교육훈련의 목적은 경비지도사의 자격시험 합격자에게 소정의 기본교육 훈련을 실시하여 경비지도사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지식을 습득시키는데 있다[23].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한 자가 받아야 할 교육과정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24].

<표3-11> 경비지도사 기본교육훈련 교과과정

구 분	교과목		시 간
공 통 (20시간)	o 경비업법		4
	o 법학개론		2
	o 청원경찰법		2
	o 경비실기(봉술 및 호신술)		4
	o 교육기법		4
	o 입교·졸업·평가		4
실 습	일반경비지도사	· 시설경비	5
		· 호송경비	5
		· 신변보호	5
		· 기계경비개론	2
		· 일반경비현장실습	7
	기계경비지도사	· 기계경비 운용관리	7
		· 기계경비 기획 및 설계	7
		· 인력경비 개론	3
		· 기계경비 현장실습	7
계			44

자료 :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관련

경비지도사 기본교육훈련은 경비업법 시행규칙에 의해 총44시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공

22) 경비업법 시행령 제21조.
23) 경비협회, 2000년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계획.
24)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6조.

통과목으로는 경비업법(4시간), 법학개론(2시간), 청원경찰법(2시간), 경비실기(4시간), 교육기법(4시간), 입교·졸업·평가(4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습과목으로는 일반경비지도사는 시설경비 (5시간), 호송경비 (5시간), 신변보호 (5시간), 기계경비개론 (2시간), 일반경비현장실습 (7시간), 기계경비지도사는 기계경비 운용관리 (7시간),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7시간), 인력경비개론 (3시간), 기계경비 현장실습 (7시간)으로 구성된다.

2. 한국민간경비 교육훈련의 개선방안

1) 지역별 경비전문교육 기관의 설치

민간경비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는 경비원들의 자질향상과 전문적인 직업인으로 양성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기간, 교수, 교육훈련계획, 과목편성, 그리고 사후평가 등 경비업무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총괄하는 지역별전문교육기관 설립이 필요한 때이다. 경비원의 신임·직무교육훈련, 경비지도사의 신임·직무교육훈련 그리고,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경비업자들의 경영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다양성 있게 전문화되어 가는 경비산업의 부응하고, 국민개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비업무의 중요성을 감안 할 때 경비원 및 경비지도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역별로 경비전문 학교설립은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민간경비산업은 하이테크부문과 연계되어 발전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지역별전문교육훈련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지역별 전문 교육훈련기관의 설치가 어렵다면, 선진국처럼 정부가 표준과 절차를 만들고 정부에 의해 자격과 능력을 부여받은 민간경비전문직업학교에 위탁교육훈련을 실시케 하고 교과과정과 최저교육훈련시간을 수료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는 시스템의 도입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 교과과정의 개편

교육훈련은 인간을 희망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활동이며, 그들의 의식이나 행동을 기대수준에 이르게끔 개선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계획적인 사회화 활동이다. 따라서 민간경비원에 대한 교육훈련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교과목들은 경비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

요한 지식과 기술의 향상뿐만 아니라 가치관과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선택된 것이어야 한다. 교육이 단기간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현장 근무시에 받게되는 직무스트레스, 건강관리 등을 고려해 볼 때 교육훈련이 끝난 후 일선에 복귀한 뒤의 사기증진을 위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단기교육훈련으로는 무리가 있겠지만 장기교육과정에는 이러한 교과목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의 경우 실제 교육훈련 시간이 외국에 비해 적게 배정되어 있으며 교과목도 이론 과목보다 실제 현장 업무에서 필요한 실무위주의 교육훈련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3) 민간경비업무의 세분화

민간경비의 업무로 미국은 9개(자영경비, 경비와 순찰서비스, 경보응답, 사설탐정, 무장운송, 자물쇠, 컨설턴트, 제조업과 유통, 기타)로 구분되고 호주의 경우 Guarding(경비), 접근시큐리티, 사설탐정, 시큐리티 분석 및 위기 평가, 시큐리티 사업관리로 구분하고 일본에서는 시설경비, 교통유도, 혼잡경비, 운반경비, 신변보호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는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로 구분하고 있다.

시큐리티 산업의 발전이나 전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큐리티 산업의 현실태를 볼 때 우리나라의 경비업의 경비업무로서 5가지 구분은 너무 단순한 분류로 볼 수 있다. 이를 재검토하여 빠른 시큐리티 산업의 흐름에 부응해서 선진국의 업무 분류처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4) 자격제도의 개선

우리 나라에서는 경비지도사 자격제도를 만들어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하여 1개의 자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총기휴대 경비원, 무장호송 경비원, 신변보호 전문, 경보응답, 상황실(관제실)운영, 기계경비전문, 기계경비전문보조, 경비견훈련, 사설탐정, 특수분야의 자격제도 등 다양한 자격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호주 역시 자격증을 취득해야 취업이 될 수 있는 업무분야별 기능별로 등급을 정하여 자격제도를 부여하는 자격증 국가로 불릴 정도이다. 일본의 경우 1개의 검증(1급, 2급)과 2개의 자격증(경비원 지도교육 책임자 제도, 기계경비업무 관리자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검정분야는 공항보안경비, 교통유도 경비, 핵연료 물질 등 운반경비, 귀중품운반 경비 등의 분야에서 실시

하고 있다.

급성장하고 있는 시큐리티 산업의 변화에 부응하고 고객들에게 양질의 시큐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큐리티 근무요원의 자질 향상과 전문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에서도 시큐리티 업무의 세분화와 다양한 자격제도의 도입을 고려해야 할 때이다.

5. 대학의 역할 강화

민간경비산업을 위하여 우수한 인력을 배출하고 기술을 개발하며, 새로운 경비시장의 수요를 창출하여 궁극적으로 범죄예방을 가능케 하여 주는 원동력은 바로 대학의 역할과 기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대학에서의 학문적 발달이 늦은 이유 중의 하나는 대부분의 민간경비업체가 대학졸업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전반적인 수준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대학에서도 민간경비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준비도 소홀하게 취급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민간경비산업에 있어서 우수인력의 배출 및 기술의 개발, 민간경비 시장의 수요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학의 역할과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하겠다[25].

미국대학에서 민간경비 교육이 놀랄 만큼 급성장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민간경비 학문을 강의하는 대학의 교육자들 민간경비 교육·훈련program개발, 대학교과과정 개발, 경비업법 발전을 위한 공동노력 그리고 경비산업 분야의 조사연구 실시 등과 같이 학문적인 분야에서 많은 연구를 실시한 결과이다. 이에 힘입어 오늘날 미국의 민간경비산업은 세계의 중추적인 국가로서 오늘날까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오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민간경비 분야의 발전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서는 대학교단위의 민간경비 학과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국민들에게는 민간경비, 경비직이라는 용어자체가 낮은 직종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고등교육기관의 설치를 장려해야 하겠다. 현재, 전문대학 단위에서는 "경호행정과" 라는 명칭으로 학과개설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4년제 대학 민간경비 학과 및 대학원 석·박사과정의 민간경비학 전공과정을 개설하고, 시큐리티 전공을 한 우수한 자원이 배출되어 이들이 시큐리티 업계에서 활동을 할 때에만 전문직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다.

---

25) 이윤근, 민간경비론-경비지도사 양성과정교본(서울 : 한국경비협회, 2001), p.152.

6. 교육기법의 개선

교육훈련에 있어서도 각 개인의 필요와 관심, 그리고 능력을 감안하여 직무수행능력을 최대한 신장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교육생들의 관심과 문제인식 그리고 학습능력 역시 차이가 있으므로, 그러한 개인차를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운영과 교육방법의 적용을 다양화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훈련 과정은 주로 이론위주의 강의가 대부분이며 참여식 교수방법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획일적인 교육보다는 교육생의 수준에 맞는 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즉 강의식 교수기법보다는 교육미디어를 활용한 수업, 토론식수업, 실습위주수업, 연구발표식수업 등의 다양한 기법을 개발해야 한다.

V. 결 론

한국사회의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라서 치안환경도 급변하여 가고 있는바 과거와 달리 범죄양성이 복잡화되고 화이테크화 되어 가면서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불법적 집단행위나 질서파괴행위 등 각종 사회병리현상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경찰은 예산부족과 과중한 업무량,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경찰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국민들은 자신들이 비용을 부담하고라도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민간경비의 탄생을 가져오게 되었다.

오늘날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실질적 동반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부인 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의 성장속도로 볼 때 시큐리티 분야는 앞으로 공경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예상된다.

민간경비 산업의 성장에는 고객에 대한 범죄예방과 손실보호라는 경비서비스의 책임과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책임과 의무의 결과는 고객의 만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양질의 민간경비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키 위해 경비원들에게 효율적인 교육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한국 민간경비교육훈련의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교육훈련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민간경비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민간경비의 전문화를 위해 다양한 민간경비업무의 분류와 국가적으로 인정된 표준절차에 의해 전문 시큐리티 훈련기관(academy, college) 등에서 교육훈련을

책임지고 있는 있다. 민간경비의 선진화를 위해 우리 나라도 민간경비교육훈련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민간경비의 교육훈련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별 전문교육 훈련기관의 설치나 선진국과 같은 정부에 의해 자격과 능력을 부여받은 민간경비 전문직업 훈련기관에 의한 위탁교육실시, 시대에 부응하는 민간경비 교과과정의 개편과 훈련시간의 조정, 보다 내실화 된 차별교육의 실시, 다양한 민간경비업무분류와 대학단위의 민간경비 학과의 우수한 자원배출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개선을 통해서 한국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은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한국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은 어느 한 사람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업계 종사자 모두의 자각과 노력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오석홍.(1996). 인사행정론, 서울 : 박영사.

이상원.(2000). 방범론, 서울 : 대명출판사.

이윤근.(1999). 민간경비론, 서울 : 육서당.

——.(2001). 민간경비론, 서울 : 한국민간경비협회.

이황우.(2002). 경찰행정학, 서울 : 법문사.

조철옥.(2000). 경찰행정학, 서울 : 대영문화사.

강효은.(2001). "외국 사설탐정제도의 활용과 법적 고찰", 수사연구.

박동균.(2002). "한국경비지도사 발전방향", 경호경비연구, 제5호. 한국경호경비학회.

이상원.(2002). "경비지도사 교육훈련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 경호경비연구, 제5호. 한국경호경비학회.

——.(1994). "경찰교육훈련의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호. 한국공안행정학회.

이윤근.(2000). "한국민간경비 산업의 발전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 창립학술세미나 자료.

Donald O. Schultz, 현대경찰행정학(Modern Police Administration), 이상원 · 남궁구.(1992). 서울 : 진명문화사.

경비업법

경비업법 시행령

경비업법 시행규칙

Cunningham William C., John J. Strauchs and Clifford W. Van Meter, The Hallcrest Report Ⅱ, Newton, MA : Butterworth-Heinemann, 1990.

Fennelly Lawrence J., Handbook of Loss Prevention and Crime Prevention, 3rd ed, Newton, MA : Butterworth-Heinemann, 1996.

Fisher Robert J. and Gion Green, Introduction to Security, 6th ed., Woburn, MA : Butterworth-Heinemann, 1998.

Keith Ashley, Private Investigators, Sydney : Southwood Press, 2001.

Wilson O.W. & Roy C. Mclaren, Police Administration, 4th ed. N.Y. : McGraw-Hill Inc., 1977.

National Security Training Academy data.

Security Provider Act.

Asset Security Training Implementation Kit, Western Australian Department of Training and Employment.

Australia Qualification Frame work.

日本警備業法

ABSTRACT

A Study on the Private Security Training in Korea

By Lim, Moung Soon

Korean social structure is changing by leaps and bounds caused by industrialization, urbanization and information. Because of this, the sense of value, and moral consciousness of Korean people have been edteriorating and all kinds of social evils have been increasing also.

However, the police who ought to be in charge of public well-being, security, social order are not playing their role on account of bad working conditions, and lack of budget. For this reason, individuals are desirous of preserving their security and lives at their cost. Private security has emerged at this background.